

2018. 10. 16. 10:00

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광 윤 환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김정태 의원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 정수의 명확화(안 제2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에 결산검사 위원 정수 3인~5인을 5인으로 정하고자 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이상 5인이하”를 “5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 ----- -- 5인----- ----- ----- -----.

붙임 2)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감사위원의 선임)

-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함.

4. 주요내용

- 군정질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안 제66조의2제4항~제5항)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66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96시간에서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변경하고,
- 안 제66조의2 제5항에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48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96시간”을 “72시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5항 중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u> ①~③(생략)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u>96시간</u>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질문시간 <u>48시간</u> 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u>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u>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u>72시간</u> ----- -----. ⑤----- <u>24시간</u> ----- ----- ----- ----- -----.

붙임 2)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 관내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생활안전을 도모

4. 주요내용

-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 등을 명시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관내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 속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에 재난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4조, 5조에 지원신청방법과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 등에 대해 명시.
- 안 제6조, 7조에 소방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개선 사항 조사를 위한 위탁과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조사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 필요 사항의 점검과 개선사항의 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노 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	☐ 소방 ☐ 기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1)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현풍면 ‘읍’승격에 승인(행정안전부 승인 2018. 9. 5.)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표1(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옥포면보건지소란을 유가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삽입하고, 반송보건진료소란을 한정보건의지소란 다음에 삽입하며,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변경 한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등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등
- (4) 입법예고 : 2018. 9. 17. ~ 9. 27.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5일자로 옥포면과 현풍면이 ‘읍’ 설치
승인됨에 따라 읍 승격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내용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변경.

※ 참고로 현풍은 보건소가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음.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옥포면”을 각각 “옥포읍”으로 하고, 옥포읍보건지소(종전의 옥포면보건지소)란을 유가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삽입하고 반송보건진료소란을 한정보건진료소란 다음에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달 성 군 보 건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17	달성군 일원
화 원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	화원읍 일원
논 공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	논공읍 일원
다 사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	다사읍 일원
유 가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0	유가읍 일원
<u>옥 포 읍 보 건 지 소</u>	<u>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2</u>	<u>옥포읍 일원</u>
가 창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	가창면 일원
하 빈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	하빈면 일원
구 지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	구지면 일원
음 리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동1길 9	봉리, 용1·2·3리, 상리, 쌍계1·2리, 초곡리, 음리, 양리1·2리
한 정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6길 17	한정1·2·3리, 가태1·2리, 본말1·2리
<u>반 송 보 건 진 료 소</u>	<u>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11</u>	<u>기세리, 반송1·2리, 김홍 1·2·3리</u>
봉 촌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52길 66	봉촌1·2리, 동곡1리
무 등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734	대평1·2리, 무등1·2리, 기곡1·2리
대 암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53길 5-3	대암1·2리, 목단1·2리, 유산리, 내1·2리
징 리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0길 46	오설리, 도동1·2리, 징리
고 봉 보 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 47-2	고봉리, 평촌1·2리, 가천리, 예현리, 응암1·3리

붙임 2)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현풍면 ‘읍’승격에 승인(행정안전부 승인 2018. 9. 5.)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887명 → 892명 (증5)
 - 집행기관 정원 : 873명 → 878명 (증5)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2018. 9. 17. ~ 9. 27.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옥포면, 현풍면의 ‘읍’ 승격에 따라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중 정원 887명을 892명으로 5명 증원하고,
- 안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873명을 878명으로 5명 증원.
- 직급별 정원에는 읍 및 그 출장소에 6급 이하 5명을 증원.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87”을 “89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73”을 “878”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887</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873</u> 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u>892</u> ----- ----- 1. ----- : <u>878</u> 명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87892	553	14	98	124172	985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858863	548	14	74	124172	9855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1	25	2	4	57	53
6급이하 계	808813	517	11	69	118164	9352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옥포·현풍면 ‘읍’ 승격에 승인(행정안전부 승인 2018. 9. 5.)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5명(6급 +3, 8급 +2)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1,465,532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465,532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1,465,532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계
세 입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지 방 세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의존재원							
세 출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인 건 비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재원 조달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271,660	281,983	292,699	303,821	315,366	1,465,532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하여 보다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설치를 명시(안 제1조)
-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및 조성(안 제2조~제3조)
-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안 제4조)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심의(안 제5조~제6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9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24. ~ 9. 13.(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인구 30만에 대비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목적과 설치에 대하여,
-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기금조성에 관해 규정.

- 안 제4조에는 기금용도를 규정.
-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3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보다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3년 경상일반재원 세입평균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조례」에 따른 달성군재정계획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금의 조성은 2017 회계연도 결산분 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면과 현풍면의 읍 승격이 승인됨에 따라 옥포읍, 현풍읍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

4. 주요내용

- 옥포읍, 현풍읍 설치
 - [별표1], [별표2], [별표3]의 옥포읍, 현풍읍 전부를 유가읍과 가창면 사이에 삽입
- 관련 조례 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9. 7. ~ 9. 27.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9월 5일 옥포면과 현풍면의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옥포읍과 현풍읍 설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옥포읍과 현풍읍 설치 조항을 신설.
- 별표1, 별표2, 별표3의 옥포읍란 전부를 유가읍란 다음에 삽입하며 현풍읍란 전부를 옥포읍란 다음에 삽입·조정하였고,

- 부칙에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하 “유가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이하 “유가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이하 “옥포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이하 “옥포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이하 “현풍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이하 “현풍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각 옥포면, 옥포면장, 현풍면,
현풍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각각 옥포읍,
옥포읍장, 현풍읍, 현풍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포면” 및 “현풍면”을 각각 “옥포읍” 및 “현풍읍”으로 하고, 옥포읍란(종전의 옥포면란)을 유가읍란 다음에 삽입하며, 현풍읍란(종전의 현풍면란)을 옥포읍란(종전의 옥포면란) 다음에 삽입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 및 제3항,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중 “옥포면”과 “현풍면”을 각각 “옥포읍”, “현풍읍”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현풍면”을 “현풍읍”으로 한다.

【별표1】

읍 면 리 의 명 칭 과 관 할 구 역

읍·면의 명 칭	리의 명칭	관 할 구 역
화원읍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종래의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일원
논공읍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종래의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일원
다사읍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종래의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세천리로 편입된 1114, 1115, 1116, 1117번지 제외), 세천리(서재리에서 편입된 1620-1, 1620-2, 1566-4, 1633-1 번지 포함),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일원
유가읍	읍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종래의 읍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일원
옥포읍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종래의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일원
현풍읍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종래의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일원
가창면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종래의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일원
하빈면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춘리	종래의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춘리 일원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가천리, 평촌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종래의 창리, 응암리, 고봉리, 가천리, 평촌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일원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6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읍 소계	9	25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풍읍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읍 소계	11	36	36

【별표3】

리 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본리1리	제 1 반	994~1077
		2	774~982
		3	832~1005
		4	1016~1076
		5	1035~1062
		6	915~1033
		7	907~943
		8	856~863
		9	911~900
		10	877~887
		11	839~899
		12	867~905
		13	925~939
		14	850~854
		15	2408~2412
		16	1900~2200(2200제외)
		17	2200~2298
	본리2리	제 1 반	2304~2316
		2	2321~2337
		3	2338~2449
		4	790~798
	본리3리	제 1 반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101~312호
		2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401~612호
		3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701~912호
		4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1001~1212호
		5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1301~1512호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본리3리	제 6 반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1동) 1601~1812호
		7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01~1702호
		8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03~1705호
		9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06~610호
		10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701~1210호
		11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306~1810호
		12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11~914호
		13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2동) 1011~1814호
		14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3동) 101~705호
		15	1149번지(세광무지개아파트 103동) 801~1603호
	본리4리	제 1 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본리5리	제 1 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본리5리	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11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신 당 리	제1 반	1347~1358
		2	1114~1357
		3	1128~1138
		4	1140~1159
		5	1153~1174
		6	1158~1172
		7	927~1027
		8	982~1020
		9	990~1040
		10	1041~1620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교항1리	제1 반	1170~1310
		2	1280~1289
		3	1107~1256
		4	1268~1282
		5	1070~1283
		6	1113~1129
		7	1249~1260
		8	1225~1245
		9	1397~1412
		10	1380~1392
		11	1318~1415
		12	1419~1449
		13	1338~1351
		14	1307~1317
		15	1301~1318
		16	1319~1330
	교항2리	제 1 반	2739~2750
		2	2061~2750
		3	1700~1714
		4	1645~1670
	교항3리	제 1 반	1519(제림아파트 101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 101동102호~1502호)
		2	1519(제림아파트 101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 101동105호~1505호)
		3	1519(제림아파트 101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 101동107호~1507호)
		4	1519(제림아파트 102동101호~ 901호) (제림아파트 102동102호~1302호)
		5	1519(제림아파트 102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 102동105호~1505호)
		6	1519(제림아파트 102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 102동107호~1507호)
		7	1519(제림아파트 103동101호~ 801호) (제림아파트 103동102호~1402호)
		8	1519(제림아파트 103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 103동105호~1505호)
		9	1519(제림아파트 103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 103동107호~1507호)
		10	1519(제림아파트 103동108호~1508호) (제림아파트 103동109호~1509호)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교향3리	11	1519(제림아파트 104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 104동102호~1502호)
		12	1519(제림아파트 104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 104동105호~1505호)
		13	1519(제림아파트 104동106호~ 806호) (제림아파트 104동107호~ 807호) (제림아파트 104동108호~ 808호) (제림아파트 104동109호~ 809호) (제림아파트 104동110호~ 810호)
		14	1519(제림아파트 104동906호~1506호) (제림아파트 104동907호~1507호) (제림아파트 104동908호~1508호) (제림아파트 104동909호~1509호) (제림아파트 104동910호~1510호)
		15	1519(제림아파트 104동111호~1511호) (제림아파트 104동112호~1512호)
		16	1519(제림아파트 104동113호~1513호) (제림아파트 104동114호~1514호)
	교향4리	제 1 반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1동 101~1305
		2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2동 101~1505
		3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3동 101~1505
		4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4동 101~1602
		5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5동 101~1302
		6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6동 101~1605
		7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7동 101~1605
		8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8동 101~1405
		9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9동 201~1405
	교향5리	제 1 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1동 101~1804
		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2동 101~1804
		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3동 101~1804
		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4동 101~1304
		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5동 101~1304
		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6동 101~1404
		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7동 101~1504
		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8동 101~1304
		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9동 101~1404
		10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0동 101~1702
		11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1동 201~1804
		1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2동 101~1604
		1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3동 101~1504
		1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4동 201~1802
		1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5동 201~1504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교향5리	1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6동 201~1804
		1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7동 201~1804
		1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8동 201~1602
		1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9동 201~1404
	교향6리	제1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1동 101호 ~ 804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1호 ~ 1402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3호 ~ 1404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3동 201호 ~ 16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1호 ~ 1502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3호 ~ 1704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101호 ~ 1802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203호 ~ 1704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201호 ~ 1802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103호 ~ 1804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1호 ~ 1802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3호 ~ 1804호
	강림1리	제1반	880~905
		2	1038~1062
		3	1006~1044
		4	961~1051
		5	971~1051
		6	920~946
		7	930~946
		8	701~880
		9	560~700
		10	1101~1217(1105, 1133제외)
	강림2리	제1반	247~259
		2	262~296
		3	338~358
		4	330~341
		5	312~336
		6	235~302
		7	535~557
		8	535-4~557
	강림3리	제1반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2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1동) 103~1503, 104~1504, 105 ~ 1505
		3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2동) 101~1501, 102~1502
		4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2동) 103~1503, 304~1504, 105~1505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강림3리	4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2동) 103~1503, 304~1504, 105~1505
		5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3동) 101~1501, 102~1502
		6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3동) 303~1503, 104~1504, 105~1505
		7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4동) 101~1501, 102~1502
		8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4동) 303~1503, 104~1504, 105~1505
		9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5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5동) 104~1104, 105~1105
		11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6동) 101~901, 102~902
		12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6동) 303~1503, 104~1504, 105~1505
		13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6동) 106~1306, 107~1307
		14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7동) 101~1401, 102~1402
		15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7동) 103~1703, 104~1704, 105~1705
		16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7동) 106~1806, 107~1807
		17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8동) 101~1501, 102~1502
		18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8동) 103~1703, 104~1704, 105~1705
		19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8동) 106~1706, 107~1707
		20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9동) 101~1101, 102~1102
		21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09동) 103~1603, 104~1604, 105~1605
		22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10동) 101~1801, 102~1802
		23	1099(옥포허브시티아파트 110동) 103~1803, 304~1804
	강림4리	제 1 반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 101~606
		2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 701~1306
		3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 101~606
		4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 701~1306
		5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 101~606
		6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 701~1306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강림4리	7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 101~606
		8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 701~1306
		9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 101~606
		10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 701~1306
		11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101~510
		12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601~910
		13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1001~1310
		14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1401~1710
		15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101~510
		16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601~910
		17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1001~1310
		18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1401~1710
		19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101~510
		20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601~910
		21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1001~1310
		22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1401~1810
		23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101~510
		24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601~910
		25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1001~1310
		26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1401~1810
		27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101~506
		28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601~908
		29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1001~1404
		30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101~410
		31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501~810
		32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901~1206
		33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105~410
		34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501~810
		35	1105(옥포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901~1206
	강림5리	제 1 반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1~1802
		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3~1804
		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5~1806
		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301~903
		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01~1703
		6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4~1705
		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3동 101~1304
		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4동 101~1304
		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5동 101~1304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강림5리	1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6동 101~1304
		1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7동 101~1104
		1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8동 101~1104
		1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9동 101~1204
		1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201~1302
		1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103~1505
		16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1~1502
		1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3~905
		1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03~1805
		1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101~1802
		2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303~1804
		2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1~903
		2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01~1803
		2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4~1805
	송 촌 리	제1 반	320~363
		2	351~375
		3	323~345
	간 경 리	제1 반	327~850
		2	655~765
		3	664~767
		4	679~756
		5	691~706
		6	754~779
		7	792~804
		8	791~823
		9	812~836
		10	830~849
		11	922~960
		12	848~863
		13	135~154(109~109-10,150~150-6제외)
		14	156~162
		15	139~146-2
		16	109~109-10,150~150-6
	기 세 리	제 1 반	10~19
		2	600~617
		3	620~690
		4	700~727
		5	750~810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읍	반송1리	제 1 반	141~151
		2	127~141
		3	111~127
		4	106~111
	반송2리	제 1 반	525-2~529
		2	425~430
		3	772~785
		4	674~694, 786~817
	김흥1리	제 1 반	76~156
		2	81~98
		3	115~131
	김흥2리	제 1 반	791~799
		2	709~750
		3	748~766
		4	717~729
		5	445~470
		6	542~687
	김흥3리	제 1 반	1320~1354
		2	1356~1402
		3	1167~1185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상 1 리	제1 반	189~357, 92~96
		2	310~364
		3	304
		4	188
	상 2 리	제 1 반	503~599
		2	596~606
		3	558~579
		4	561~580
		5	544~565
		6	548~569
		7	635~678
		8	669~699
		9	632~657
		10	702~703
	중 1 리	제 1 반	108~142
		2	129~160
		3	241~302
		4	161~165
		5	170~196
		6	186~243
		7	197~216
		8	155~249
		9	245~275
		10	242~278
		11	261~413
		12	287
	중 2 리	제 1 반	335-1(학산아파트 101동 101호~218호)
		2	335-1(학산아파트 101동 301호~518호)
		3	335-1(학산아파트 102동 101호~218호)
		4	335-1(학산아파트 102동 301호~518호)
		5	335-1(학산아파트 103동 101호~213호)
		6	335-1(학산아파트 103동 301호~513호)
		7	335-1(학산아파트 201동 101호~511호)
		8	335-1(학산아파트 202동 101호~511호)
		9	335-1(학산아파트 203동 101호~511호)
		10	335-1(학산아파트 205동 101호~507호)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중 3 리	제 1 반	236-2(가동 101~510)
		2	236-2(나동 101~511)
	중 4 리	제 1 반	96
		2	94-2(제일맨션 101~105호)
		3	94-2(" 101~105호)
	중 5 리	제 1 반	443, 443-1 ~ 8, 444, 444-1 ~ 7, 445, 446, 446-1 ~ 6, 447, 447-1 ~ 9, 448, 448-1 ~ 2, 449, 449-1 ~ 7, 450-1 ~ 2
		2	451, 451-1 ~ 3, 452, 452-1 ~ 3, 454, 454-1 ~ 5, 455, 455-1 ~ 11
		3	460, 460-1 ~ 2, 461, 461-1 ~ 7, 462, 462-1 ~ 13, 463, 463-1, 464-1 ~ 3, 465, 465-1 ~ 11, 466, 466-1, 467, 467-1 ~ 6
		4	468, 468-1 ~ 6, 469, 469-1, 470, 470-1 ~ 11, 471, 471-1 ~ 3, 472, 472-1, 473, 473-1 ~ 9, 474, 474-1 ~ 5, 475, 475-1 ~ 4
		5	476, 477, 477-1 ~ 30, 478, 478-1 ~ 5, 479, 479-1 ~ 2, 482, 483, 489, 489-1 ~ 3, 490, 490-1, 491, 491-1 ~ 2, 492, 492-1 ~ 2, 493, 493-1, 494, 494-1 ~ 2, 495, 495-1, 496, 496-1 ~ 2, 495, 495-1, 496, 496-1 ~ 2, 497, 497-1 ~ 3, 498, 498-1 ~ 3, 499, 499-1 ~ 2, 501, 501-1 ~ 3, 502, 502-1 ~ 3, 504, 504-1 ~ 2, 505, 505-1 ~ 2, 506, 506-1 ~ 3, 507, 508, 508-3 ~ 4, 509, 509-1 ~ 7, 510, 510-1 ~ 6, 511, 511-1 ~ 5, 512, 512-1 ~ 3
	중 6 리	제 1 반	486(서한e다음아파트 101동) 101~1001, 102~1102, 103~1203, 105~1205
		2	486(서한e다음아파트 102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3	486(서한e다음아파트 103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4	486(서한e다음아파트 104동) 201~1301, 202~1502, 203~1703, 205~1705
		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5동)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중 6 리	6	3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6동)
		7	101~1501, 102~1502, 103~1603, 105~160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7동)
		8	101~1501, 102~1502, 103~1603, 105~160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8동)
		9	201~2001, 202~2002, 203~2003, 205~200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9동)
		10	201~2201, 202~2202, 203~2203 486(서한e다음아파트 110동)
		11	201~2101, 202~2102, 203~2103 486(서한e다음아파트 111동)
	중 7 리	제 1 반	201~2101, 202~2102, 203~2003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1동)
			201~2501, 202~2502
		2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1동) 203~2503, 204~2504
		3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2동) 201~2501, 202~2502
		4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2동) 203~2503, 204~2504
		5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3동) 201~2501, 202~2502
		6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4동) 201~2501, 202~2502, 203~2503
		7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5동) 101~2501, 102~2502
		8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6동) 201~2401, 202~2402
		9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6동) 203~2403, 204~2404
		10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7동) 201~2501, 202~2502
		11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7동) 203~2503, 204~2504
		12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8동) 201~2501, 202~2502
		13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8동) 203~2503, 204~2504
		14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9동) 201~2501, 202~2502
		15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09동) 203~2503, 204~2504
		16	480, 481(남해오네뜨아파트 110동) 101~2501, 102~2502호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중 8 리	제 1 반	487(천년나무 1차 101동) 101~2201, 102~2202, 103~2203, 104~2204
		2	487(천년나무 1차 101동) 105~2205, 106~2206, 107~2207, 108~2208
		3	487(천년나무 1차 102동) 301~2401, 302~2402, 303~2403, 304~2404
		4	487(천년나무 1차 102동) 305~2405, 306~2406, 307~2407, 308~2408
		5	487(천년나무 1차 103동) 101~2501, 102~2402, 103~2403, 104~2404
		6	487(천년나무 1차 103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7	487(천년나무 1차 104동) 101~2401, 102~2402, 103~2403, 104~2404
		8	487(천년나무 1차 104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9	487(천년나무 1차 1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호
		10	487(천년나무 1차 105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1	487(천년나무 1차 106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2	487(천년나무 1차 106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3	487(천년나무 1차 1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4	487(천년나무 1차 107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5	487(천년나무 1차 108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6	487(천년나무 1차 108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중 9 리	제 1 반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2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5~2005, 106~2006, 307~2007, 308~2008
		3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4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5~2005, 106~2006, 107~2007, 108~2008
		5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1~1901, 102~1902, 103~2103, 104~2104
		6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7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8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중 9 리	제 9 반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0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11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1~2101, 302~2102, 303~2103, 304~2104
		12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5~2105, 306~2106, 307~2107, 308~2108
		13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304~2104
		14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중 10 리	제 1 반	484(풍경채 1차 101동) 101~1201, 102~1202, 103~1203, 105~1205
		2	484(풍경채 1차 102동) 101~1301, 102~1602, 103~1603, 105~1605
		3	484(풍경채 1차 103동) 101~1501, 102~1502, 103~1803, 105~1805, 106~1806
		4	484(풍경채 1차 104동) 101~1701, 102~1702호
		5	484(풍경채 1차 105동) 101~1401, 102~1402
		6	484(풍경채 1차 106동) 101~1301, 102~1302호
		7	484(풍경채 1차 107동) 101~1601, 102~1602, 103~1603, 105~1605
		8	484(풍경채 1차 108동) 101~1701, 102~1702, 103~1803, 105~1805, 106~1806
		9	484(풍경채 1차 109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5~1705
		10	484(풍경채 1차 110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11	484(풍경채 1차 111동) 101~1101, 102~1102, 103~1103, 105~1105
	중 11 리	제 1 반	485(일동미라주) 101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2	485(일동미라주) 102동 201~1801, 2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3	485(일동미라주) 103동 201~1801, 202~1802, 203~1803, 204~1804, 205~1805
		4	485(일동미라주) 104동 101~1801, 1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5	485(일동미라주) 105동 201~2101, 102~2102, 103~2103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중 11 리	6	485(일동미라주) 105동 204~2104, 105~2105호
		7	485(일동미라주) 106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804, 105~1805
		8	485(일동미라주) 107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9	485(일동미라주) 108동 101~1801, 102~1802, 103~1803, 204~1504, 205~1505
		10	485(일동미라주) 109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11	485(일동미라주) 110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중 12 리	제 1 반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1~1701, 102~1702, 103~1703
		2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4~1704, 105~1705, 106~1706
		3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4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1~2111, 112~2112, 113~2113
		5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4~2114, 115~2115, 116~2116
		6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7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8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9~1709, 110~1710, 111~1711, 112~1712
		9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4~2104, 105~2105, 106~2106
		11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12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311~1711, 112~1712, 113~1713, 114~1714
		13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4~1704
		14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5~1705, 106~1706, 107~1707, 308~1708
		15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209~1709, 210~1710, 211~1711, 212~1712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하 리	제 1 반	1~21
		2	3~36
		3	140~157
		4	48~135
		5	132~166
		6	173~242
		7	233~246
		8	219~232
		9	100~126
		10	99~121
		11	66~85
		12	2~65
	부 1 리	제1 반	189~216
		2	223~228
		3	226~300
		4	290~318
		5	290~450
		6	273~277
		7	267-1
	부 2 리	제 1 반	352~370
		2	370~406
		3	406~411
		4	411~418
		5	418~443
	부 3 리	제 1 반	272~464
		2	482~505
		3	463~499
	부 4 리	제 1 반	143~338
		2	139~351
		3	140
		4	333~335(성창빌라 1~6동)
		5	332~335(성창빌라 7~12동)
	성하1리	제 1 반	560~635
		2	621~662
	성하2리	제 1 반	301~398
		2	561~698
	성하3리	제 1 반	402~424
		2	424~447
		3	447~451
		4	451~487
		5	459~460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읍	성하4리	제 1 반	145~192
	원교1리	제 1 반	21~38
		2	28~31
		3	69~959
		4	31~34
		5	39
		6	39~75
		7	163-8~163-10
	원교2리	제 1 반	1~12
		2	12~1751
		3	12
		4	12~19
	원교3리	제 1 반	103(주공아파트 1동)
		2	103(주공아파트 2동)
		3	103(주공아파트 3동)
		4	103(주공아파트 5동)
		5	103(주공아파트 6동)
		6	103(주공아파트 7동)
	원교4리	제 1 반	1585~1731
	자 모 리	제 1 반	212~307
		2	266~379
		3	500~887
	오산1리	제 1 반	63~216
	오산2리	2	24~416
		제 1 반	901~940
		2	882~916
		3	905~994
	지 1 리	제 1 반	1041~1261
		2	980~1275
	지 2 리	제 1 반	619~1122
		2	704~1111
		3	704~761
		4	704~1112
	대 1 리	제 1 반	681~868
		2	794~967
		3	604-5~621-3
		4	623-3~673-2
		5	507-2~535-1
	대 2 리	제 1 반	658~1027
		2	920~1027
	대 3 리	제 1 반	401 ~ 414
		2	2 ~ 310
	신 기 리	제 1 반	120~227
		2	120~304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1】

읍 면 리 의 명 칭 과 관 할 구 역

현 행			개 정 안		
읍·면의 명 칭	리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의 명 칭	리의 명칭	관 할 구 역
옥포면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종래의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일원	옥포읍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종래의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일원
현풍면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종래의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일원	현풍읍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종래의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일원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6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리	6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25	25	옥포읍 소계	9	25	25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 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현 풍읍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신기리	1	신기리
현 풍면 소계	11	36	36	현 풍읍 소계	11	36	36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본리1리	제 1 반	994~1077	옥포읍	본리1리	제 1 반	994~1077
		2	774~982			2	774~982
		3	832~1005			3	832~1005
		4	1016~1076			4	1016~1076
		5	1035~1062			5	1035~1062
		6	915~1033			6	915~1033
		7	907~943			7	907~943
		8	856~863			8	856~863
		9	911~900			9	911~900
		10	877~887			10	877~887
		11	839~899			11	839~899
		12	867~905			12	867~905
		13	925~939			13	925~939
		14	850~854			14	850~854
		15	2408~2412			15	2408~2412
		16	1900~2200(2200제외)			16	1900~2200(2200제외)
		17	2200~2298			17	2200~2298
	본리2리	제 1 반	2304~2316		본리2리	제 1 반	2304~2316
		2	2321~2337			2	2321~2337
		3	2338~2449			3	2338~2449
		4	790~798			4	790~798
	본리3리	제 1 반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01~312호		본리3리	제 1 반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01~312호
		2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401~612호			2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401~612호
		3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701~912호			3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701~912호
		4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001~1212호			4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001~1212호
		5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301~1512호			5	1149번지(세광무지개)파트 101동 1301~1512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본리3리	제 6 반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1동 1601~1812호	옥포읍	본리3리	제 6 반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1동 1601~1812호
		7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1~1702호			7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1~1702호
		8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3~1705호			8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3~1705호
		9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6~610호			9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6~610호
		10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701~1210호			10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701~1210호
		11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306~1810호			11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306~1810호
		12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11~914호			12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11~914호
		13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11~1814호			13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2동 1011~1814호
		14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3동 101~705호			14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3동 101~705호
		15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3동 801~1603호			15	1149번지(새광무자기)파트 103동 801~1603호
	본리4리	제 1 반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본리4리	제 1 반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2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2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3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3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4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4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5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5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6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6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7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7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8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8	본리토지구확장사업지구 188 1 2 L 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본리5리	제1반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옥포읍	본리5리	제1반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2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3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4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5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5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6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6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7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8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9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10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11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1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2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 동 101~3302			13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 동 101~3302
		14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4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5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1B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본리5리	제 16 반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옥포읍	본리5리	제 16 반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7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8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19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20	본리토지확장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신당리	제1 반	1347~1358		신당리	제1 반	1347~1358
		2	1114~1357			2	1114~1357
		3	1128~1138			3	1128~1138
		4	1140~1159			4	1140~1159
		5	1153~1174			5	1153~1174
		6	1158~1172			6	1158~1172
		7	927~1027			7	927~1027
		8	982~1020			8	982~1020
		9	990~1040			9	990~1040
		10	1041~1620			10	1041~1620
	교항1리	제 1 반	1170~1310		교항1리	제 1 반	1170~1310
		2	1280~1289			2	1280~1289
		3	1107~1256			3	1107~1256
		4	1268~1282			4	1268~1282
		5	1070~1283			5	1070~1283
		6	1113~1129			6	1113~1129
		7	1249~1260			7	1249~1260
		8	1225~1245			8	1225~1245
		9	1397~1412			9	1397~1412
		10	1380~1392			10	1380~1392
		11	1318~1415			11	1318~1415
		12	1419~1449			12	1419~1449
		13	1338~1351			13	1338~1351
		14	1307~1317			14	1307~1317
		15	1301~1318			15	1301~1318
		16	1319~1330			16	1319~1330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교항2리	제1반	2739~2750	옥포읍	교항2리	제1반	2739~2750
		2	2061~2750			2	2061~2750
		3	1700~1714			3	1700~1714
		4	1645~1670			4	1645~1670
	교항3리	제1반	1519(제림아파트 101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101동102호~1502호)		교항3리	제1반	1519(제림아파트 101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101동102호~1502호)
		2	1519(제림아파트 101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1동105호~1505호)			2	1519(제림아파트 101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1동105호~1505호)
		3	1519(제림아파트 101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1동107호~1507호)			3	1519(제림아파트 101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1동107호~1507호)
		4	1519(제림아파트 102동101호~901호) (제림아파트102동102호~1302호)			4	1519(제림아파트 102동101호~901호) (제림아파트102동102호~1302호)
		5	1519(제림아파트 102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2동105호~1505호)			5	1519(제림아파트 102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2동105호~1505호)
		6	1519(제림아파트 102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2동107호~1507호)			6	1519(제림아파트 102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2동107호~1507호)
		7	1519(제림아파트 103동101호~801호) (제림아파트103동102호~1402호)			7	1519(제림아파트 103동101호~801호) (제림아파트103동102호~1402호)
		8	1519(제림아파트 103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3동105호~1505호)			8	1519(제림아파트 103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3동105호~1505호)
		9	1519(제림아파트 103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3동107호~1507호)			9	1519(제림아파트 103동106호~1506호) (제림아파트103동107호~1507호)
		10	1519(제림아파트 103동108호~1508호) (제림아파트103동109호~1509호)			10	1519(제림아파트 103동108호~1508호) (제림아파트103동109호~1509호)
		11	1519(제림아파트 104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104동102호~1502호)			11	1519(제림아파트 104동101호~1501호) (제림아파트104동102호~1502호)
		12	1519(제림아파트 104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4동105호~1505호)			12	1519(제림아파트 104동103호~1503호) (제림아파트104동105호~1505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교항3리	13	1519(제림아파트 104동106호~ 806호) (재판아파트104동107호~ 807호) (재판아파트104동108호~ 808호) (재판아파트104동109호~ 809호) (재판아파트104동110호~ 810호)	옥포읍	교항3리	13	1519(제림아파트 104동106호~ 806호) (재판아파트104동107호~ 807호) (재판아파트104동108호~ 808호) (재판아파트104동109호~ 809호) (재판아파트104동110호~ 810호)
		14	1519(제림아파트 104동906호~1506호) (재판아파트04동907호~1507호) (재판아파트104동908호~1508호) (재판아파트104동909호~1509호) (재판아파트104동910호~1510호)			14	1519(제림아파트 104동906호~1506호) (재판아파트04동907호~1507호) (재판아파트104동908호~1508호) (재판아파트104동909호~1509호) (재판아파트104동910호~1510호)
		15	1519(제림아파트 104동111호~1511호) (재판아파트104동112호~1512호)			15	1519(제림아파트 104동111호~1511호) (재판아파트104동112호~1512호)
		16	1519(제림아파트 104동113호~1513호) (재판아파트104동114호~1514호)			16	1519(제림아파트 104동113호~1513호) (재판아파트104동114호~1514호)
	교항4리	제 1 반	2892(옥포 이진캐스빌)		교항4리	제 1 반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1동 101~1305				801동 101~1305
		2	2892(옥포 이진캐스빌)			2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2동 101~1505				802동 101~1505
		3	2892(옥포 이진캐스빌)			3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3동 101~1505				803동 101~1505
		4	2892(옥포 이진캐스빌)			4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4동 101~1602				804동 101~1602
		5	2892(옥포 이진캐스빌)			5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5동 101~1302				805동 101~1302
		6	2892(옥포 이진캐스빌)			6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6동 101~1605				806동 101~1605
		7	2892(옥포 이진캐스빌)			7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7동 101~1605				807동 101~1605
		8	2892(옥포 이진캐스빌)			8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8동 101~1405				808동 101~1405
		9	2892(옥포 이진캐스빌)			9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9동 201~1405				809동 201~14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교항5리	제 1 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1동 101~1804	옥포읍	교항5리	제 1 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1동 101~1804
		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2동 101~1804			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2동 101~1804
		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3동 101~1804			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3동 101~1804
		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4동 101~1304			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4동 101~1304
		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5동 101~1304			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5동 101~1304
		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6동 101~1404			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6동 101~1404
		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7동 101~1504			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7동 101~1504
		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8동 101~1304			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8동 101~1304
		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9동 101~1404			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9동 101~1404
		10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0동 101~1702			10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0동 101~1702
		11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1동 201~1804			11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1동 201~1804
		1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2동 101~1604			1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2동 101~1604
		1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3동 101~1504			1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3동 101~1504
		1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4동 201~1802			1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4동 201~1802
		1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5동 201~1504			1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5동 201~1504
		1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6동 201~1804			1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6동 201~1804
		1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7동 201~1804			1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7동 201~1804
		1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8동 201~1602			1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8동 201~1602
		1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9동 201~1404			1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9동 201~140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교항6리	제1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1동 101호 ~ 804호	옥포읍	교항6리	제1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1동 101호 ~ 804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1호 ~ 1402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1호 ~ 1402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3호 ~ 1404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3호 ~ 1404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3동 201호 ~ 1602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3동 201호 ~ 16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1호 ~ 15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1호 ~ 1502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3호 ~ 1704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3호 ~ 1704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101호 ~ 1802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101호 ~ 1802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203호 ~ 1704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203호 ~ 1704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201호 ~ 1802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201호 ~ 1802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103호 ~ 1804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103호 ~ 1804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1호 ~ 1802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1호 ~ 1802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3호 ~ 1804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3호 ~ 1804호
	강림1리	제1반	880~905		강림1리	제1반	880~905
		2	1038~1062			2	1038~1062
		3	1006~1044			3	1006~1044
		4	961~1051			4	961~1051
		5	971~1051			5	971~1051
		6	920~946			6	920~946
		7	930~946			7	930~946
		8	701~880			8	701~880
		9	560~700			9	560~700
		10	1101~1217(1105, 1133제외)			10	1101~1217(1105, 1133제외)
	강림2리	제1반	247~259		강림2리	제1반	247~259
		2	262~296			2	262~296
		3	338~358			3	338~358
		4	330~341			4	330~341
		5	312~336			5	312~336
		6	235~302			6	235~302
		7	535~557			7	535~557
		8	535-4~557			8	535-4~557
		10	243~248, 565~569			10	243~248, 565~569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강림3리	제1반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옥포읍	강림3리	제1반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2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1동) 103~1503, 104~1504, 105 ~ 1505			2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1동) 103~1503, 104~1504, 105 ~ 1505
		3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2동) 101~1501, 102~1502			3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2동) 101~1501, 102~1502
		4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2동) 103~1503, 304~1504, 105~1505			4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2동) 103~1503, 304~1504, 105~1505
		5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3동) 101~1501, 102~1502			5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3동) 101~1501, 102~1502
		6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3동) 303~1503, 104~1504, 105~1505			6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3동) 303~1503, 104~1504, 105~1505
		7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4동) 101~1501, 102~1502			7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4동) 101~1501, 102~1502
		8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4동) 303~1503, 104~1504, 105~1505			8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4동) 303~1503, 104~1504, 105~1505
		9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5동) 101~1401, 102~1402, 103~1403			9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5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5동) 104~1104, 105~1105			10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5동) 104~1104, 105~1105
		11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101~901, 102~902			11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101~901, 102~902
		12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303~1503, 104~1504, 105~1505			12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303~1503, 104~1504, 105~1505
		13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106~1306, 107~1307			13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6동) 106~1306, 107~1307
		14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1~1401, 102~1402			14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1~1401, 102~1402
		15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3~1703, 104~1704, 105~1705			15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3~1703, 104~1704, 105~1705
		16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6~1806, 107~1807			16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7동) 106~1806, 107~1807
		17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1~1501, 102~1502			17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1~1501, 102~1502
		18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3~1703, 104~1704, 105~1705			18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3~1703, 104~1704, 105~1705
		19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6~1706, 107~1707			19	1099(옥포하브스타파트 108동) 106~1706, 107~1707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강림3리	20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09동) 101~1101, 102~1102	옥포읍	강림3리	20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09동) 101~1101, 102~1102
		21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09동) 103~1603, 104~1604, 105~1605			21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09동) 103~1603, 104~1604, 105~1605
		22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10동) 101~1801, 102~1802			22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10동) 101~1801, 102~1802
		23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10동) 103~1803, 304~1804			23	1099(옥포하브스타아파트 110동) 103~1803, 304~1804
	강림4리	제 1 반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101~606		강림4리	제 1 반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101~606
		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701~1306			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1동)701~1306
		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101~606			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101~606
		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701~1306			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2동)701~1306
		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101~606			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101~606
		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701~1306			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3동)701~1306
		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 101~606			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 101~606
		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701~1306			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4동)701~1306
		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 101~606			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 101~606
		1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701~1306			1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5동)701~1306
		1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101~510			1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101~510
		1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601~910			1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601~910
		1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1001~1310			1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1001~1310
		1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401~1710			1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6동) 401~1710
		1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101~510			1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101~510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강림4리	1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601~910	옥포읍	강림4리	1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 601~910
		1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1001~1310			1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1001~1310
		1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1401~1710			1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7동)1401~1710
		1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101~510			1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101~510
		2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601~910			2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 601~910
		2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1001~1310			2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1001~1310
		2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1401~1810			2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8동)1401~1810
		2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101~510			2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101~510
		2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601~910			2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 601~910
		2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1001~1310			2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1001~1310
		2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1401~1810			26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09동)1401~1810
		2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101~506			27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101~506
		2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601~908			28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 601~908
		2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1001~1404			29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0동)1001~1404
		3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101~410			30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101~410
		3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501~810			31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 501~810
		3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901~1206			32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1동)901~1206
		3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105~410			33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105~410
		3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501~810			34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 501~810
		3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901~1206			35	1105(옥포 LH채널나무 2단지아파트 212동)901~1206

현행				개정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면	강림5리	제 1 반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1~1802	옥 포 읍	강림5리	제 1 반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1~1802
		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3~1804			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3~1804
		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5~1806			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105~1806
		4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301~903			4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301~903
		5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01~1703			5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01~1703
		6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104~1705			6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104~1705
		7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3동101~1304			7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3동101~1304
		8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4동101~1304			8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4동101~1304
		9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5동101~1304			9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5동101~1304
		10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6동 101~1304			10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6동 101~1304
		11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7동 101~1104			11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7동 101~1104
		1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8동 101~1104			1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8동 101~1104
		1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9동 101~1204			1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09동 101~1204
		14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201~1302			14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201~1302
		15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103~1505			15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103~1505
		16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1~1502			16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1~1502
		17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3~905			17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3~905
		18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1003~1805			18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1003~1805
		19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101~1802			19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101~1802
		20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303~1804			20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303~1804

현행				개정안			
읍 면	리	반	구역	읍 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강림5리	21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1~903	옥포읍	강림5리	21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1~903
		2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1001~1803			22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1001~1803
		2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04~1805			23	1133(옥포 LH채널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04~1805
	송촌리	제1 반	320~363		송촌리	제1 반	320~363
		2	351~375			2	351~375
		3	323~345			3	323~345
	간경리	제1 반	327~850		간경리	제1 반	327~850
		2	655~765			2	655~765
		3	664~767			3	664~767
		4	679~756			4	679~756
		5	691~706			5	691~706
		6	754~779			6	754~779
		7	792~804			7	792~804
		8	791~823			8	791~823
		9	812~836			9	812~836
		10	830~849			10	830~849
		11	922~960			11	922~960
		12	848~863			12	848~863
		13	135~154(109~109-1			13	135~154(109~109-1
		14	0,150~150-6제외)			14	0,150~150-6제외)
		15	156~162			15	156~162
		16	139~146-2 109~109-10,150~150-6			16	139~146-2 109~109-10,150~150-6
	기세리	제 1 반	10~19		기세리	제 1 반	10~19
		2	600~617			2	600~617
		3	620~690			3	620~690
		4	700~727			4	700~727
		5	750~810			5	750~810
	반송1리	제 1 반	141~151		반송1리	제 1 반	141~151
		2	127~141			2	127~141
		3	111~127			3	111~127
		4	106~111			4	106~111
	반송2리	제 1 반	525-2~529		반송2리	제 1 반	525-2~529
		2	425~430			2	425~430
		3	772~785			3	772~785
		4	674~694, 786~817			4	674~694, 786~817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김흥1리	제 1 반	76~156	옥포읍	김흥1리	제 1 반	76~156
		2	81~98			2	81~98
		3	115~131			3	115~131
	김흥2리	제 1 반	791~799		김흥2리	제 1 반	791~799
		2	709~750			2	709~750
		3	748~766			3	748~766
		4	717~729			4	717~729
		5	445~470			5	445~470
		6	542~687			6	542~687
	김흥3리	제 1 반	1320~1354		김흥3리	제 1 반	1320~1354
		2	1356~1402			2	1356~1402
		3	1167~1185			3	1167~118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상 1 리	제1 반	189~357, 92~96	현풍읍	상 1 리	제1 반	189~357, 92~96
		2	310~364			2	310~364
		3	304			3	304
		4	188			4	188
	상 2 리	제 1 반	503~599		상 2 리	제 1 반	503~599
		2	596~606			2	596~606
		3	558~579			3	558~579
		4	561~580			4	561~580
		5	544~565			5	544~565
		6	548~569			6	548~569
		7	635~678			7	635~678
		8	669~699			8	669~699
		9	632~657			9	632~657
		10	702~703			10	702~703
	중 1 리	제 1 반	108~142		중 1 리	제 1 반	108~142
		2	129~160			2	129~160
		3	241~302			3	241~302
		4	161~165			4	161~165
		5	170~196			5	170~196
		6	186~243			6	186~243
		7	197~216			7	197~216
		8	155~249			8	155~249
		9	245~275			9	245~275
		10	242~278			10	242~278
		11	261~413			11	261~413
		12	287			12	287
	중 2 리	제 1 반	335-1(학산아파트 101동 101호~218호)		중 2 리	제 1 반	335-1(학산아파트 101동 101호~218호)
		2	335-1(학산아파트 101동 301호~518호)			2	335-1(학산아파트 101동 301호~518호)
		3	335-1(학산아파트 102동 101호~218호)			3	335-1(학산아파트 102동 101호~218호)
		4	335-1(학산아파트 102동 301호~518호)			4	335-1(학산아파트 102동 301호~518호)
		5	335-1(학산아파트 103동 101호~213호)			5	335-1(학산아파트 103동 101호~213호)
		6	335-1(학산아파트 103동 301호~513호)			6	335-1(학산아파트 103동 301호~513호)
		7	335-1(학산아파트 201동 101호~511호)			7	335-1(학산아파트 201동 101호~511호)
		8	335-1(학산아파트 202동 101호~511호)			8	335-1(학산아파트 202동 101호~511호)
		9	335-1(학산아파트 203동 101호~511호)			9	335-1(학산아파트 203동 101호~511호)
		10	335-1(학산아파트 205동 101호~507호)			10	335-1(학산아파트 205동 101호~507호)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 3 리	제 1 반	236-2(가동 101~510)	현 풍 읍	중 3 리	제 1 반	236-2(가동 101~510)
		2	236-2(나동 101~511)			2	236-2(나동 101~511)
	중 4 리	제 1 반	96		중 4 리	제 1 반	96
		2	94-2(제일맨션 101~105호)			2	94-2(제일맨션 101~105호)
		3	94-2(" 101~105호)			3	94-2(" 101~105호)
	중 5 리	1	443, 443-1 ~ 8, 444, 444-1 ~ 7, 445, 446, 446-1 ~ 6, 447, 447-1 ~ 9, 448, 448-1 ~ 2, 449, 449-1 ~ 7, 450-1 ~ 2		중 5 리	1	443, 443-1 ~ 8, 444, 444-1 ~ 7, 445, 446, 446-1 ~ 6, 447, 447-1 ~ 9, 448, 448-1 ~ 2, 449, 449-1 ~ 7, 450-1 ~ 2
		2	451, 451-1 ~ 3, 452, 452-1 ~ 3, 454, 454-1 ~ 5, 455, 455-1 ~ 11			2	451, 451-1 ~ 3, 452, 452-1 ~ 3, 454, 454-1 ~ 5, 455, 455-1 ~ 11
		3	460, 460-1 ~ 2, 461, 461-1 ~ 7, 462, 462-1 ~ 13, 463, 463-1, 464-1 ~ 3, 465, 465-1 ~ 11, 466, 466-1, 467, 467-1 ~ 6			3	460, 460-1 ~ 2, 461, 461-1 ~ 7, 462, 462-1 ~ 13, 463, 463-1, 464-1 ~ 3, 465, 465-1 ~ 11, 466, 466-1, 467, 467-1 ~ 6
		4	468, 468-1 ~ 6, 469, 469-1, 470, 470-1 ~ 11, 471, 471-1 ~ 3, 472, 472-1, 473, 473-1 ~ 9,			4	468, 468-1 ~ 6, 469, 469-1, 470, 470-1 ~ 11, 471, 471-1 ~ 3, 472, 472-1, 473, 473-1 ~ 9,
		5	474, 474-1 ~ 5, 475, 475-1 ~ 4, 476, 477, 477-1 ~ 30, 478, 478-1 ~ 5, 479, 479-1 ~ 2, 482, 483, 489, 489-1 ~ 3, 490, 490-1, 491, 491-1 ~ 2, 492, 492-1 ~ 2, 493, 493-1, 494, 494-1 ~ 2, 495, 495-1, 496, 496-1 ~ 2, 495, 495-1, 496, 496-1 ~ 2, 497, 497-1 ~ 3, 498, 498-1 ~ 3, 499, 499-1 ~ 2, 501, 501-1 ~ 3, 502, 502-1 ~ 3, 504, 504-1 ~ 2, 505, 505-1 ~ 2, 506, 506-1 ~ 3, 507, 508, 508-3 ~ 4, 509, 509-1 ~ 7, 510, 510-1 ~ 6, 511, 511-1 ~ 5, 512, 512-1 ~ 3			5	474, 474-1 ~ 5, 475, 475-1 ~ 4, 476, 477, 477-1 ~ 30, 478, 478-1 ~ 5, 479, 479-1 ~ 2, 482, 483, 489, 489-1 ~ 3, 490, 490-1, 491, 491-1 ~ 2, 492, 492-1 ~ 2, 493, 493-1, 494, 494-1 ~ 2, 495, 495-1, 496, 496-1 ~ 2, 495, 495-1, 496, 496-1 ~ 2, 497, 497-1 ~ 3, 498, 498-1 ~ 3, 499, 499-1 ~ 2, 501, 501-1 ~ 3, 502, 502-1 ~ 3, 504, 504-1 ~ 2, 505, 505-1 ~ 2, 506, 506-1 ~ 3, 507, 508, 508-3 ~ 4, 509, 509-1 ~ 7, 510, 510-1 ~ 6, 511, 511-1 ~ 5, 512, 512-1 ~ 3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6 리	제 1 반	486(서한e다음아파트 101동) 101~1001, 102~1102, 103~1203, 105~1205	현 풍 읍	중 6 리	제 1 반	486(서한e다음아파트 101동) 101~1001, 102~1102, 103~1203, 105~1205
		2	486(서한e다음아파트 102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2	486(서한e다음아파트 102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3	486(서한e다음아파트 103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3	486(서한e다음아파트 103동) 101~1101, 102~1202, 103~1303, 105~1305
		4	486(서한e다음아파트 104동) 2 0 1 ~ 1 3 0 1 , 2 0 2 ~ 1 5 0 2 , 203~1703, 205~1705			4	486(서한e다음아파트 104동) 2 0 1 ~ 1 3 0 1 , 2 0 2 ~ 1 5 0 2 , 203~1703, 205~1705
		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5동) 3 0 1 ~ 1 4 0 1 , 1 0 2 ~ 1 4 0 2 , 103~1403, 105~1405			5	486(서한e다음아파트 105동) 3 0 1 ~ 1 4 0 1 , 1 0 2 ~ 1 4 0 2 , 103~1403, 105~1405
		6	486(서한e다음아파트 106동) 1 0 1 ~ 1 5 0 1 , 1 0 2 ~ 1 5 0 2 , 103~1603, 105~1605			6	486(서한e다음아파트 106동) 1 0 1 ~ 1 5 0 1 , 1 0 2 ~ 1 5 0 2 , 103~1603, 105~1605
		7	486(서한e다음아파트 107동) 1 0 1 ~ 1 5 0 1 , 1 0 2 ~ 1 5 0 2 , 103~1603, 105~1605			7	486(서한e다음아파트 107동) 1 0 1 ~ 1 5 0 1 , 1 0 2 ~ 1 5 0 2 , 103~1603, 105~1605
		8	486(서한e다음아파트 108동) 2 0 1 ~ 2 0 0 1 , 2 0 2 ~ 2 0 0 2 , 203~2003, 205~2005			8	486(서한e다음아파트 108동) 2 0 1 ~ 2 0 0 1 , 2 0 2 ~ 2 0 0 2 , 203~2003, 205~2005
		9	486(서한e다음아파트 109동) 2 0 1 ~ 2 2 0 1 , 202~2202, 203~2203			9	486(서한e다음아파트 109동) 2 0 1 ~ 2 2 0 1 , 202~2202, 203~2203
		10	486(서한e다음아파트 110동) 2 0 1 ~ 2 1 0 1 , 202~2102, 203~2103			10	486(서한e다음아파트 110동) 2 0 1 ~ 2 1 0 1 , 202~2102, 203~2103
		11	486(서한e다음아파트 111동) 2 0 1 ~ 2 1 0 1 , 202~2102, 203~2003			11	486(서한e다음아파트 111동) 2 0 1 ~ 2 1 0 1 , 202~2102, 203~2003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7 리	제 1 반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1동 201~2501, 202~2502	현 풍 읍	중 7 리	제 1 반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1동 201~2501, 202~2502
		2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1동 203~2503, 204~2504			2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1동 203~2503, 204~2504
		3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2동 201~2501, 202~2502			3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2동 201~2501, 202~2502
		4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2동 203~2503, 204~2504			4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2동 203~2503, 204~2504
		5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3동 201~2501, 202~2502			5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3동 201~2501, 202~2502
		6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4동 201~2501, 202~2502			6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4동 201~2501, 202~2502
		7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5동 101~2501, 102~2502			7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5동 101~2501, 102~2502
		8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6동 201~2401, 202~2402			8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6동 201~2401, 202~2402
		9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6동 203~2403, 204~2404			9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6동 203~2403, 204~2404
		10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7동 201~2501, 202~2502			10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7동 201~2501, 202~2502
		11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7동 203~2503, 204~2504			11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7동 203~2503, 204~2504
		12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8동 201~2501, 202~2502			12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8동 201~2501, 202~2502
		13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8동 203~2503, 204~2504			13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8동 203~2503, 204~2504
		14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9동 201~2501, 202~2502			14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9동 201~2501, 202~2502
		15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9동 203~2503, 204~2504			15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09동 203~2503, 204~2504
		16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10동 101~2501, 102~2502호			16	48Q, 48I(남해오래마을)파트 110동 101~2501, 102~2502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8 리	제 1 반	487(찬)무 1차 101동 101~2201, 102~2202, 103~2203, 104~2204	현 풍 읍	중 8 리	제 1 반	487(찬)무 1차 101동 101~2201, 102~2202, 103~2203, 104~2204
		2	487(찬)무 1차 101동 105~2205, 106~2206, 107~2207, 108~2208			2	487(찬)무 1차 101동 105~2205, 106~2206, 107~2207, 108~2208
		3	487(찬)무 1차 102동 301~2401, 302~2402, 303~2403, 304~2404			3	487(찬)무 1차 102동 301~2401, 302~2402, 303~2403, 304~2404
		4	487(찬)무 1차 102동 305~2405, 306~2406, 307~2407, 308~2408			4	487(찬)무 1차 102동 305~2405, 306~2406, 307~2407, 308~2408
		5	487(찬)무 1차 103동 101~2501, 102~2402, 103~2403, 104~2404			5	487(찬)무 1차 103동 101~2501, 102~2402, 103~2403, 104~2404
		6	487(찬)무 1차 103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6	487(찬)무 1차 103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7	487(찬)무 1차 104동 101~2401, 102~2402, 103~2403, 104~2404			7	487(찬)무 1차 104동 101~2401, 102~2402, 103~2403, 104~2404
		8	487(찬)무 1차 104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8	487(찬)무 1차 104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9	487(찬)무 1차 1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호			9	487(찬)무 1차 1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호
		10	487(찬)무 1차 105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0	487(찬)무 1차 105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1	487(찬)무 1차 106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1	487(찬)무 1차 106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2	487(찬)무 1차 106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2	487(찬)무 1차 106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3	487(찬)무 1차 1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3	487(찬)무 1차 1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4	487(찬)무 1차 107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4	487(찬)무 1차 107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5	487(찬)무 1차 108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5	487(찬)무 1차 108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6	487(찬)무 1차 108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6	487(찬)무 1차 108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9 리	제 1 반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현 풍 읍	중 9 리	제 1 반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2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5~2005, 106~2006, 307~2007, 308~2008			2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5~2005, 106~2006, 307~2007, 308~2008
		3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3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4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5~2005, 106~2006, 107~2007, 108~2008			4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5~2005, 106~2006, 107~2007, 108~2008
		5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1~1901, 102~1902, 103~2103, 104~2104			5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1~1901, 102~1902, 103~2103, 104~2104
		6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6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7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7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8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8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9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9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0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10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11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1~2101, 302~2102, 303~2103, 304~2104			11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1~2101, 302~2102, 303~2103, 304~2104
		12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5~2105, 306~2106, 307~2107, 308~2108			12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5~2105, 306~2106, 307~2107, 308~2108
		13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304~2104			13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304~2104
		14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14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10 리	제 1 반	484(풍경채 1차 101동) 101~1201, 102~1202, 103~1203, 105~1205	현 풍 읍	중 10 리	제 1 반	484(풍경채 1차 101동) 101~1201, 102~1202, 103~1203, 105~1205
		2	484(풍경채 1차 102동) 101~1301, 102~1602, 103~1603, 105~1605			2	484(풍경채 1차 102동) 101~1301, 102~1602, 103~1603, 105~1605
		3	484(풍경채 1차 103동) 101~1501, 102~1502, 103~1803, 105~1805, 106~1806			3	484(풍경채 1차 103동) 101~1501, 102~1502, 103~1803, 105~1805, 106~1806
		4	484(풍경채 1차 104동) 101~1701, 102~1702호			4	484(풍경채 1차 104동) 101~1701, 102~1702호
		5	484(풍경채 1차 105동) 101~1401, 102~1402			5	484(풍경채 1차 105동) 101~1401, 102~1402
		6	484(풍경채 1차 106동) 101~1301, 102~1302호			6	484(풍경채 1차 106동) 101~1301, 102~1302호
		7	484(풍경채 1차 107동) 101~1601, 102~1602, 103~1603, 105~1605			7	484(풍경채 1차 107동) 101~1601, 102~1602, 103~1603, 105~1605
		8	484(풍경채 1차 108동) 101~1701, 102~1702, 103~1803, 105~1805, 106~1806			8	484(풍경채 1차 108동) 101~1701, 102~1702, 103~1803, 105~1805, 106~1806
		9	484(풍경채 1차 109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5~1705			9	484(풍경채 1차 109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5~1705
		10	484(풍경채 1차 110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10	484(풍경채 1차 110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11	484(풍경채 1차 111동) 101~1101, 102~1102, 103~1103, 105~1105			11	484(풍경채 1차 111동) 101~1101, 102~1102, 103~1103, 105~11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11 리	제 1 반	485(일동미라주) 101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현 풍 읍	중 11 리	제 1 반	485(일동미라주) 101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2	485(일동미라주) 102동 201~1801, 2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2	485(일동미라주) 102동 201~1801, 2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3	485(일동미라주) 103동 201~1801, 202~1802, 203~1803, 204~1804, 205~1805			3	485(일동미라주) 103동 201~1801, 202~1802, 203~1803, 204~1804, 205~1805
		4	485(일동미라주) 104동 101~1801, 1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4	485(일동미라주) 104동 101~1801, 1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5	485(일동미라주) 105동 201~2101, 102~2102, 103~2103			5	485(일동미라주) 105동 201~2101, 102~2102, 103~2103
		6	485(일동미라주) 105동 204~2104, 105~2105호			6	485(일동미라주) 105동 204~2104, 105~2105호
		7	485(일동미라주) 106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804, 105~1805			7	485(일동미라주) 106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804, 105~1805
		8	485(일동미라주) 107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8	485(일동미라주) 107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9	485(일동미라주) 108동 101~1801, 102~1802, 103~1803, 204~1504, 205~1505			9	485(일동미라주) 108동 101~1801, 102~1802, 103~1803, 204~1504, 205~1505
		10	485(일동미라주) 109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10	485(일동미라주) 109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11	485(일동미라주) 110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11	485(일동미라주) 110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중 12 리	제 1 반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1~1701, 102~1702, 103~1703	현 풍 읍	중 12 리	제 1 반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1~1701, 102~1702, 103~1703
		2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4~1704, 105~1705, 106~1706			2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4~1704, 105~1705, 106~1706
		3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3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4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11~2111, 112~2112, 113~2113			4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11~2111, 112~2112, 113~2113
		5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14~2114, 115~2115, 116~2116			5	481(찬년나무 3단지) 301동 114~2114, 115~2115, 116~2116
		6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6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7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7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8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9~1709, 110~1710, 111~1711, 112~1712			8	481(찬년나무 3단지) 302동 109~1709, 110~1710, 111~1711, 112~1712
		9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1~2101, 102~2102, 103~2103			9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4~2104, 105~2105, 106~2106			10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4~2104, 105~2105, 106~2106
		11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11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12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311~1711, 112~1712, 113~1713, 114~1714			12	481(찬년나무 3단지) 303동 311~1711, 112~1712, 113~1713, 114~1714
		13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4~1704			13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4~1704
		14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105~1705, 106~1706, 107~1707, 308~1708			14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105~1705, 106~1706, 107~1707, 308~1708
		15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209~1709, 210~1710, 211~1711, 212~1712			15	481(찬년나무 3단지) 304동 209~1709, 210~1710, 211~1711, 212~1712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하 리	제 1 반	1~21	현 풍 읍	하 리	제 1 반	1~21
		2	3~36			2	3~36
		3	140~157			3	140~157
		4	48~135			4	48~135
		5	132~166			5	132~166
		6	173~242			6	173~242
		7	233~246			7	233~246
		8	219~232			8	219~232
		9	100~126			9	100~126
		10	99~121			10	99~121
		11	66~85			11	66~85
		12	2~65			12	2~65
	부 1 리	제1 반	189~216		부 1 리	제1 반	189~216
		2	223~228			2	223~228
		3	226~300			3	226~300
		4	290~318			4	290~318
		5	290~450			5	290~450
		6	273~277			6	273~277
		7	267-1			7	267-1
	부 2 리	제 1 반	352~370		부 2 리	제 1 반	352~370
		2	370~406			2	370~406
		3	406~411			3	406~411
		4	411~418			4	411~418
		5	418~443			5	418~443
	부 3 리	제 1 반	272~464		부 3 리	제 1 반	272~464
		2	482~505			2	482~505
		3	463~499			3	463~499
	부 4 리	제 1 반	143~338		부 4 리	제 1 반	143~338
		2	139~351			2	139~351
		3	140			3	140
		4	333~335(성창빌라			4	333~335(성창빌라
		5	1~6동)			5	1~6동)
			332~335(성창빌라				332~335(성창빌라
			7~12동)				7~12동)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성하1리	제 1 반	560~635	현 풍 읍	성하1리	제 1 반	560~635
		2	621~662			2	621~662
	성하2리	제 1 반	301~398		성하2리	제 1 반	301~398
		2	561~698			2	561~698
	성하3리	제 1 반	402~424		성하3리	제 1 반	402~424
		2	424~447			2	424~447
		3	447~451			3	447~451
		4	451~487			4	451~487
		5	459~460			5	459~460
	성하4리	제 1 반	145~192		성하4리	제 1 반	145~192
	원교1리	제 1 반	21~38		원교1리	제 1 반	21~38
		2	28~31			2	28~31
		3	69~959			3	69~959
		4	31~34			4	31~34
		5	39			5	39
		6	39~75			6	39~75
		7	163-8~163-10			7	163-8~163-10
	원교2리	제 1 반	1~12		원교2리	제 1 반	1~12
		2	12~1751			2	12~1751
		3	12			3	12
		4	12~19			4	12~19
	원교3리	제 1 반	103(주공아파트 1동)		원교3리	제 1 반	103(주공아파트 1동)
		2	103(주공아파트 2동)			2	103(주공아파트 2동)
		3	103(주공아파트 3동)			3	103(주공아파트 3동)
		4	103(주공아파트 5동)			4	103(주공아파트 5동)
		5	103(주공아파트 6동)			5	103(주공아파트 6동)
		6	103(주공아파트 7동)			6	103(주공아파트 7동)
	원교4리	제 1 반	1585~1731		원교4리	제 1 반	1585~1731
	자 모 리	제 1 반	212~307		자 모 리	제 1 반	212~307
		2	266~379			2	266~379
		3	500~887			3	500~887
	오산1리	제 1 반	63~216		오산1리	제 1 반	63~216
		2	24~416			2	24~416
	오산2리	제 1 반	901~940		오산2리	제 1 반	901~940
		2	882~916			2	882~916
		3	905~994			3	905~99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 풍 면	지 1 리	제 1 반	1041~1261	현 풍 읍	지 1 리	제 1 반	1041~1261		
		2	980~1275			2	980~1275		
		제 1 반	619~1122			제 1 반	619~1122		
			2				704~1111	2	704~1111
			3				704~761	3	704~761
	지 2 리	4	704~1112		지 2 리	4	704~1112		
		대 1 리	제 1 반			681~868	대 1 리	제 1 반	681~868
			2			794~967		2	794~967
			3			604-5~621-3		3	604-5~621-3
	4		623-3~673-2		4	623-3~673-2			
	5		507-2~535-1		5	507-2~535-1			
	대 2 리	제 1 반	658~1027		대 2 리	제 1 반	658~1027		
		2	920~1027			2	920~1027		
	대 3 리	제 1 반	401 ~ 414		대 3 리	제 1 반	401 ~ 414		
		2	2 ~ 310			2	2 ~ 310		
	신 기 리	제 1 반	120~227		신 기 리	제 1 반	120~227		
		2	120~304			2	120~304		

붙임 2)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우리 군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자긍심 고취 및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대구 달성지역 거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친밀감 개선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4. 주요내용

- 조례제정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적용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 지원대상 기관·단체(안 제4조~제6조)
- 포상(안 제7조)
- 시행규칙(안 제8조)

5.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1. ~ 2018. 9. 2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불입 참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에는 근로자의 정의로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근로자로 명시.
- 안 제3조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는 적용대상을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명시

- 안 제5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기관·단체를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제5조제1항 사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포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자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

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19년부터 연중 사업 실시

나.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지역 적응과 화합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국내 및 국제의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경영·노동단체 간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가.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나. 국내·국제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사업

다. 경영·노동단체 간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라.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마.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관련조문

가.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 전부터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미반영,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비용만 추계

나. 추계 결과 : 100백만원

-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지원 : 50백만원(10백만원×5년)
- 달성 We-Together 페스티벌 지원 : 50백만원(10백만원×5년)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차현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달성 We-Together 페스티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에 이어 노인복지관으로서 두 번째 신축 운영되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적용하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명칭 및 위치)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신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달성군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
 - 2.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 제4조(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 원칙 명시”(안 제4조제3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9조

6. 기타사항

- (1)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9. 7 ~ 2018. 9. 27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달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구벌대로 754’를 추가.
- 안 제4조 운영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한 수탁자 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군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
2.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u>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 내에 둔다.</u>	제2조(명칭 및 위치) <u>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u> 1. <u>달성군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u> 2. <u>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 구벌대로 754</u>
제4조(운영)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4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붙임 2)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제목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10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5조)
- 존속기한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5년)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6.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2) 부패영향평가
- (3) 성별영향평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간 연장하기 위해서임.

※ 2018. 12. 31. ~ 2023. 12. 31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9월 6일 심의를 받았음.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u> <u>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u> <u>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u> <u>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u> <u>에서 연장할 수 있다.</u>

붙임 2)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